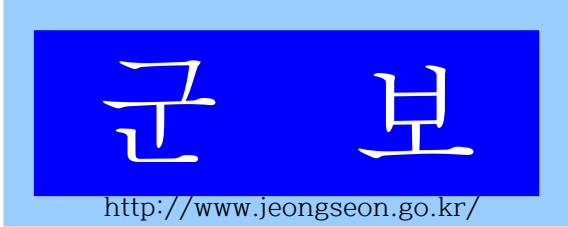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55호 2024. 3. 6.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91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수질오염방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1
- 정선군 공고 제2024-223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
- 정선군 공고 제2024-242호 2024년 제1회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13
- 정선군 공고 제2024-244호 정선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4
- 정선군 공고 제2024-258호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1
- 정선군 공고 제2024-265호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0
- 정선군 공고 제2024-266호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0

-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11호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62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10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7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4-191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수질오염방지지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정선군 고시 제2010-96호(2010. 7. 9.)로 최초 결정되어 정선군 고시 제2024-1(2024. 1. 5.)로 변경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제99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
- 명 칭 : 고한(삼탄)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 설치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위 치	규 모	기시행	금회시행	
환경기초시설 (삼탄수질정화 시설)	수질오염 방지지설	고한읍 고한리 3-1번지 일원	A=20,933㎡	19,703㎡ (사업외구역 1,325㎡)	A=8,445㎡ (기시행 중복 7,215㎡, 신규 1,230㎡)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규연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 6. 30.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4. 2. 23. ~ 2024. 3. 8.)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고한읍 고한리	3-1	대	5,677	2,061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 광업공단	
2	고한읍 고한리	5	대	621	621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 광업공단	
3	고한읍 고한리	21	잡	6,268	6,196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 광업공단	
4	고한읍 고한리	274-4	천	13,132	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환경부)	
5	고한읍 고한리	산1-160	임	3,059,675	11,53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산림청)	
6	고한읍 고한리	산216-1	임	6,936,478	414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대한불교조계종 제4 교구말사정암사	
계				10,021,851	20,933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정선군 공고 제2024-223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선군 건축 조례」에 반영(개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안 제36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건축물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2분의 1이상 띄우는 건축물 높이 기준을 10미터로 변경
-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 (안 제36조제4항)
 - 같은 대지에서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채광 거리를 두도록 이격 기준을 변경하고,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4. 2. 23. ~ 2024. 3. 14.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473),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 를 “10미터” 로 한다.

제36조제4항제2호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때에만 해당)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때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을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p> <p>1. 높이 <u>9미터</u>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p> <p>2. 높이 <u>9미터</u>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이상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u>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때에만 해당)의 건축물 높이</u></p>	<p>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 ----- -----.</p> <p>1. ---<u>10미터</u>----- -----</p> <p>2. ---<u>10미터</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u>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u></p>

현 행	개 정 안
<p>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때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p>	<p>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p>

관계법령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5. 7. 6.>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5. 7. 6., 2016. 5. 1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우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

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정선군 공고 제2024-242호

2024년 제1회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정 선 군 수

I 심의안건

- 1안) 2024년 정선군 보육계획(안) 심의
- 2안) 2024년 정선군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 기준 심의
- 3안) 2024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대상자 추천 심의

II 심의결과

- 1안) 원안 가결(참석위원 10명 중 10명 가결)
- 2안) 원안 가결(참석위원 10명 중 10명 가결)

시설명	소재지	최소필요지역 선정 지원 기간
화암분원어린이집	화암면 그림바위길 1-5	2024.03.01. ~ 2025.02.28.(1년)
새빛어린이집	고한읍 고한 9길 141	

- 3안) 원안 가결(참석위원 10명 중 10명 가결)
 - 4개소 (화암분원어린이집, 북평어린이집, 여량어린이집, 임계어린이집)

정선군 공고 제2024-244호

정선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활성화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적근거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 주요내용

- 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역할(안 제7조)
- 마.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운영 및 기능(안 제8조)
- 바.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자. 데이터기반행정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4. 2. 28. ~ 2024. 3. 19.(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19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4568

○ F A X : 033 - 560 - 2903

○ E-mail : sunnyem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정선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을 포함한다)과 「정선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군과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시스템 구축·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수집·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

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4-258호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근거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지원대상, 신청 및 중지, 환수조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3. 법적근거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입법예고 : 2024. 3. 5. ~ 2024. 3. 25.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가족행복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977), 팩스(033-560-2141)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근거)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지원근거를 둔다

제4조(지원기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하며, 양육공백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맞벌이 가정
- 2. 한부모 가정
- 3. 장애부모 가정
- 4. 다자녀 가정
- 5. 다문화 가정
- 6. 기타(장기부재·입원 등, 학교재학, 취업준비, 모의 출산, 아동학대피해위기아동 가정)

제6조(지원신청 등)

-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안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소득유형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비 고
시간제 / 영아종일제	가형	둘째아 이상 자녀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		-
	다형		-
	라형		-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 기준을 충족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적용
- ※ 첫째아 자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별 정부지원금만 지원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가구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관련 조문 : 제4조(지원기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가족행복과장 김 덕 기

정선군 공고 제2024-265호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상위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수정 반영 (안 제3조)
-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 신설 (안 제4조의2)
-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범위 신설 (안 제7조의3항)
- 라.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용어 규정 (안 제18조 관련 별표)
- 마.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안전관리시설 설치내역 서식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4. 3. 6. ~ 2024. 3. 26.(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6일(화)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환경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 전 화 : 033-560-2359
- 팩 스 : 033-560-2589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조에 의한”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중 “편의를”을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 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인의 교육)”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별표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p><u>의 규정과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u></p> <p>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 ----- ----- ----- ----- <u>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u> ----- -----.</p> <p><u>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u></p> <p><u>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u></p> <p>2. <u>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u></p> <p><u>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u></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치기준) 열 별표 규정에 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제6조(위탁관리 등) ①정선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 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p>	<p><u>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 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u> <u>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 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 의 공중화장실 등</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 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 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2호 서 식에 기록·관리해야 한다.</p> <p>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 ----- ----- ----- ----- -----</p>

현 행	개 정 안
<p>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7. (생략)</p> <p>②·③ (생략)</p> <p>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신설></p>	<p>---. ----- -----.</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p>

현 행	개 정 안
	<u>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u>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20	40	60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10	20	30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별지 제2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모	부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

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 1. 삭제 <2018. 9. 4.>
1의2. 삭제 <2018. 9. 4.>
- 2. 삭제 <2018. 9. 4.>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단으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단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5의3.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5의4.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추 들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 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 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환경과장 이 덕 중

정선군 공고 제2024-266호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군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유해폐기물을 규정하여 배출·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관리하고자함
- 행정제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불합리하게 발생 될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 법령명 추가 및 위임 법령에 따른 “대형폐기물” 정의 수정
- 생활계유해폐기물 정의 및 배출·관리 체계 마련
- 행정제재에 대한 규제 완화
- 폐기물 적정 배출 홍보 수단 다양화를 위한 조문 수정
- 쓰레기봉투 무상 공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주기 변경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4. 03. 06. ~ 2024. 03. 26.(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3월 2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과)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36),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을 “,” 로, “시행규칙” 을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생활폐기물로서” 를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 이라 한다)로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 “이라 한다)중 쓰레기 봉투” 를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봉투” 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생활계유해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생활계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공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매월 60리터” 를 “매분기 180리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시행규칙 및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가정쓰레기“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u>생활폐기물</u>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을 말한다.</p>	<p>1. ----- ----- ----- <u>생활폐기물</u>(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 ----- -----.</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u>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u></p>	<p>3. ----- <u>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봉투</u>----- ----- -----.</p>
<p>4. ~ 8. (생 략)</p>	<p>4. ~ 8.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3조의2(청결명령 등)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 ④ (생 략)

⑤ 삭 제

<신 설>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9.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의2(청결명령 등) ① -----

----- .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⑥ 생활계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공
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
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
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
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 적극 홍보해야 하
며 -----

-----.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
과 같음)

② -----
----- 매
분기 180리터-----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

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폐농약
- 2. 폐의약품
-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조례명 (규제사무명)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분						
		신 설		강 화	○	내 용 심 사		존 속 기 한 연
3.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정선군 시설국 환경과 과장 이덕종 자원순환팀장 전찬영, 주무관 배수연							
4. 근거법령 등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관 련 규 제 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생활계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자 ○ 정선군 거주자 34,054명(2024.2월말 기준)							
6. 규제존속기한	○ 상위법 및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인한 조례·규칙 개정시까지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⑥ 생활계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항 목	분 석 내 용
1. 규제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계유해폐기물은 발생량은 적으나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 이를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규정하여 배출·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적정 관리하고자 함
2. 규제대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규제로 다른 별도 규제 대안 검토 불필요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여부 : 불가능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없음
3. 비용과 편익분석/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4. 경쟁제한적 규제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5. 규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계유해폐기물에 대한 배출·관리체계의 마련이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피해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6. 이해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 진행 예정 : 2024. 3. 6. ~ 3. 26.(20일간)
7. 규제집행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있는 생활폐기물 중 생활계유해 폐기물의 배출·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23.12.19.환경부)에 따라 적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8. 부서 자체심사의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피해를 저감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규제의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환경과장 이 덕 중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11호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택시의 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개정(2023. 3. 21.)
- 정선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운행연한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정선군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 함.

2.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3.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의 명확화
 - 차령연장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그 연장 기한에 대한 규정을 정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13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2층 교통관리사업소
- 전 화 : 033 - 560 - 4364
- F A X : 033 - 562 - 6400
- e-mail : ahwoo930@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2에 따라 정선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운행연한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이하 “택시”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운행연한(이하 “차령” 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 사업용	경형·소형·중형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 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이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

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조례명 (규제사무명)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2. 구분						
		신 설	○	강 화		내 용 심 사		존 속 기 한 연 장
3.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 사항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소 장 박익균 교통행정팀장 신지영 주 무 관 안현우							
4. 근거법령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					관 련 규 제 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정선군 택시 등록현황 : 194대 ○ 정선군 택시운송사업자							
6. 규제존속기한	○ 상위법 및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인한 조례·규칙 개정시까지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3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항 목	분 석 내 용
1. 규제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의 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개정(2023. 3. 21.) ○ 정선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운행연한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정선군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규제대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규제로 다른 별도 규제 대안 검토 불필요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여부 : 불가능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없음
3. 비용과 편익분석/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의 운행연한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선군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 완화
4. 경쟁제한적 규제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5. 규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의 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개정
6. 이해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 진행 예정 : 2024. 2. 22 ~ 3. 13(20일간)
7. 규제집행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
8. 부서 자체심사 의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규제의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4-10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일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정활동비 변경(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120만원, 보조 활동비 20만원→30만원으로 증액)

3. 예고기간 : 2024. 2. 21. ~ 2. 26.(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정선군의회의회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4508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hyncs798@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의회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제2항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 ① (생 략) 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 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 만원으로 한다. ③·④ (생 략)</p>	<p>제2조(의정활동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정자료수 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 만원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 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부 칙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정활동비) ①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

③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임시개시일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일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